##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5286 발의연월일: 2022. 4. 15.

발 의 자: 박홍근 의원

찬 성 자: 강득구·강민정·강병원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김경만 · 김경협 · 김교흥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김병욱 · 김병주 · 김상희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흥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김용민 · 김원이 · 김윤덕

김의겸 · 김정호 · 김종민

김주영 · 김진표 · 김철민

김태년 • 김한정 • 김회재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박광온 • 박범계 • 박상혁

박성준 • 박영순 • 박완주

박용진 • 박재호 • 박 정

박주민 • 박찬대 • 백혜련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서영교 · 서영석 · 설 훈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신정훈 · 신현영 · 안규백 안민석 · 안호영 · 양경숙 양기대 • 양이원영 • 어기구 오기형 · 오영환 · 오영훈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유기홍・유동수・유정주 윤건영 · 윤관석 · 윤영덕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이광재 · 이동주 · 이병훈 이상민 · 이상헌 · 이성만 이소영 • 이수진 • 이수진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이원욱 • 이원택 • 이인영 이장섭 · 이재정 · 이정문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전해철 · 전혜숙 · 정성호 정일영 · 정청래 · 정춘숙

정태호·정필모·조승래 조오섭·조응천·조정식 주철현·진선미·진성준 천준호·최강욱·최기상 최인호·최종윤·최혜영 한병도·한정애·한준호 허 영·허종식·홍기원 홍성국·홍영표·홍익표 홍정민·황운하·황 희 의원(171인)

## 제안이유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검찰의 국가형 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음. 그러나,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 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 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수사권 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하였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 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

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 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하며 검사의 수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한함(안 제196조 삭제 및 안 제197조제3항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查囑託)"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구속영장 집행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搜查와"를 "그"로 한다.

제135조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37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司法警察官吏"로 한다.

제138조 중 "依한 檢事,"를 "依한"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수사, 공소제기"를 "공소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을 삭제한다.

제196조를 삭제한다.

제197조의 제목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수사)"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검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 ④ 제3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으

로 본다.

제19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법경찰관이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당해 고소인등으로부터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197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7조의4를 삭제한다.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사법경찰관리"를 각각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198조의2제2항 중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을 "者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으로 한다.

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을 "司法 警察官"으로 한다.

제2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각각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제200조의4제1항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제200조의5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0조의6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제201조제1항 본문 중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 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 로 한다.

제201조의2제4항 중 "검사와"를 "검사, 사법경찰관과"로 한다.

제203조 중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檢事의 申請"을 "사법경찰관의 申請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第203條"를 "第202條"로 한다.

제208조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제2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8조의2(피의자등 의견청취) 검사는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10조 본문 중 "報告"를 "사유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報告"를 "통지"로 한다.

제213조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을 "司法警察官吏 아닌"으로, "卽時 檢事 또는"을 "卽時"로 한다.

제213조의2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를 "司法警察官吏"로 한다. 제214조의2제2항 중 "구속한 검사"를 "구속영장을 집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검사·변호인·청구인"을 "검사·사법경찰관·변호인·청구인"으로 한다.

제21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 "逮捕 또는 拘束하는"을 "逮捕하거나 拘束영장을 집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제2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18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제218조의2제1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가"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로, "해당 검 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관할지방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수사하는 때에는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1조, 제204조, 제205조 규정에 의한 영장신청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에게 할 수 있다.

제2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제1항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檢事"로 한다.

제221조의3제1항 중 "檢事는 第221條"를 "第221條"로, "判事"를 "사법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는 判事"로 한다.

제221조의4제2항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檢事"로 한다.

제222조제3항 중 "命할"을 "요구할"로 한다.

제237조제1항 및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각각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제2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司法警察官이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查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 날로부터 3月 以內에 搜查를 完了하여 제 245조의5제1항에 따라 檢事에게 송치 또는 送付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그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1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제242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제243조 중 "檢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查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한다.

제2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있고, 검사 또는"을 "있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

관"으로 한다.

제245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 한다.

제245조의2의 제목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를 "(전문기소자문위원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를 "여부를 결정하기"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를 "전문기소자문위원을 지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전문기소자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수사자문위원이"를 "전문기소자문위원이"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의"를 "전문기소자문위원이"로 한다.

제245조의3의 제목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을 "(전문기소자문위원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를 "전문기소자문위원의 자문을 듣"으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를 "전문기소자문위원을 지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전문수사자문위원"을 각각 "전문기소자문위원"으로 한다.

제245조의4 중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전문기소자문위원"으로 한다. 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 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6을 삭제한다.

제245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3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관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8제1항 중 "제245조의5제2호"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제245조의9를 삭제한다.

제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6조의2(피의자등 의견청취)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7조를 삭제한다.

제312조의 제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을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을 "사법경찰관 앞"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제1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 외한다)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제3조(검사의 구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1조, 제203조 및 제20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검사의 조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4條(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	第84條(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
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査囑	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구속영
託)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	<u>장 집행촉탁)</u>
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고	
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	
청검사장에게 <u>그 搜査와</u> 拘束令	<u></u>
狀의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第135條(押收物處分과 當事者에	第135條(押收物處分과 當事者에
의 通知) 前3條의 決定을 함에	의 通知)
는 檢事, 被害者, 被告人 또는	<u>사법경찰관</u>
辯護人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	
다.	<b>.</b>
第137條(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	第137條(拘束令狀執行과 搜索) 司
事,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	<u> </u>
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	
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	
에 必要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	
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 內에 들어	
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	
第138條(準用規定) 第119條, 第12	第138條(準用規定)
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	

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 法警察官吏, 법원사무관등의 搜 索에 準用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 저 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 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ㅣ <삭 제> 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를 수사한다.

(생 략)

<신 설>

<신 설>

<u>依한</u>	. — –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
계 등) ①	
<u> 공소제기</u>	· — –
<삭 제>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 ② | 제197조(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수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인, 범죄사실 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④ 제3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 사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

법경찰관으로 본다.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 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②·③ (생 략)

~ ④ (생 략)

-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 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 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 <삭 제>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7)·⑧ (생 략)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 │ <삭 제> 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 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

- 1. · 2. (현행과 같음)
- 3. 사법경찰관이 제245조의5제1 항제2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 치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당해 고소인등으로부터 제245 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 은 경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⑦·⑧ (현행과 같음)

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 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 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 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 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 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생 략)

-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第198條의2(檢事의 逮捕・拘束場 | 第198條의2(檢事의 逮捕・拘束場

1198年(七十年号) ① (色号平 名
<u>ㅇ</u> )
②사법경찰관리
③ 사법경찰관리

所監察) ① (생 략)

②檢事는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逮捕 또는 拘束된 것 이라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 由가 있는 境遇에는 즉시 逮捕 또는 拘束된 <u>者를 釋放하거나</u>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 하여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u>검사</u> <u>또는 사법경찰관</u>은 수사에 필요 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 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수

所監察) ① (현행과 같음)
②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u>사법</u>
<u> 경찰관</u>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司法警察官
<u> </u>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 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 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② ~ ⑤ (생 략)

第200條의3(緊急逮捕) ①檢事 또 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 ·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 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 判事의 逮捕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수 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令狀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 ③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

•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200條의3(緊急逮捕) ① <u>司法警</u>
<u>察官</u>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司法警察官

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緊急逮捕 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 ④ (생략)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被疑者를逮捕한 경우 被疑者를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 ⑥ (생 략)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 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 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

第200亿	條의40		捕와	令狀請求
<u> </u>	]) <u>(</u> ]		<u> </u>	
	可法警	<u> </u>		
		(현행: [체포외		음) 사실 등의
고ス 				

나.	
第200條의6(準用規定) 제75조, 第	第200條의6(準用規定)
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	
條, 第83條, 第85條第1項・第3	
項 및 第4項, 제86조, 제87조, 제	
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	<u>司法警察官</u>
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 경	
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拘束"은 이를 "逮捕"로, "拘束	
令狀"은 이를 "逮捕令狀"으로	
본다.	
第201條(拘束) ①被疑者가 罪를	第201條(拘束) ①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 號	
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	<u>司法警察官</u>
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狀을 받	
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	
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	
事의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	
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	
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② ~ ⑤ (생 략)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 자 심문) ① ~ ③ (생 략)

④<u>검사와</u>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第203條(檢事의 拘束期間)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 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 를 받은 때에는 10日 以內에 公 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放하 여야 한다.

第205條(拘束期間의 延長) ①地方 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 여 搜查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 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10 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 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 을 1次에 限하여 許可할 수 있 다.

② (생략)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檢事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
자 심문) ① ~ ③ (현행과 같
호 :
④검사, 사법경찰관과
<u>, 180ee 1</u>
5 ~ ⑩ (현행과 같음)
第203條(檢事의 拘束期間)
司法警察官
第205條(拘束期間의 延長) ①
사법경찰관의 申請
에 따른 검사의 청구
第202條
<u> </u>
② (현행과 같음)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司法警

또는	司法	警察	官	에 存	友方	여	拖	東
되었	다가	釋力	汝된	者	느	다틥	<u>=</u>	重
要한	證據	를	發見	l 한	境	遇い	=	除
外하.	고는	同-	→한	犯罪	<b></b>	實會	케	關
하여	再次	拖	東す	ŀ지	못	하디	₽.	

② (생략)

<신 설>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 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第210條(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 域 外의 搜査)司法警察官吏가 管轄區域 外에서 搜査하거나 管 轄區域 外의 司法警察官吏의 囑

祭日
② (현행과 같음)
제208조의2(피의자등 의견청취)
검사는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
자, 피해자(법정대리인을 포함
한다)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
<u>을 수 있다.</u>
제209조(준용규정)
사법경찰관
<u>.</u>
第210條(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
域 外의 搜查)

託을 받어 搜査할 때에는 管轄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	
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	<u>사유를 통지</u>
200條의3, 第212條, 第214條, 第	
216條와 第217條의 規定에 依한	
搜査를 하는 境遇에 緊急을 要	
할 때에는 事後에 報告할 수 있	<u>통지</u>
다.	
第213條(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	第213條(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①司法警察官吏 아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한 때에는	
卽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	
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213條의2(準用規定) 제87조, 제	第213條의2(準用規定)
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規定은 <u>檢事</u>	<u>司法</u>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	<u>警察官吏</u>
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	
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
사) ① (생 략)	사) ① (현행과 같음)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u>구속한</u>	② <u>구속영장</u>
<u>검사</u>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	<u>을 집행하는</u>
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기	정하는	사람	에 게	제]	항	케	띠
른	적부심	사를	청구	<sup>1</sup> 할	수	있	음
을	알려이	: 한디					

- ③ ~ ⑧ (생 략)
- ⑨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① ~ ④ (생 략)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 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 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 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 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第216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①<u>檢事 또는 司法警察</u> 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 ・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 에 의하여 被疑者를 <u>逮捕 또는</u>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

	3	~	8	(현	행고	} {	같음	-)			
	9	<u> </u>	날사	• 入	<u> </u> 남기	경찰	<u></u>	•	변.	호 (	인
	• =	청구	2인								
	10	~	14)	(현	행고	} {	같음	-)			
제	215	5조	(압~	<b>产</b> ,	수색	, 건	검증	) (	1	<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度216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强
制處分) ① <u>司法警察官</u>
逮捕하거나
拘束영장을 집행하는

#### 1. • 2. (생략)

②前項 第2號의 規定은 <u>檢事 또</u> 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令狀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 한다.

#### ③ (생략)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 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 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 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제2 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

1.・2. (언앵파 숱吉)	
② 司法警察	•
宜	-
	-
③ (현행과 같음)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
강제처분) ① <u>사법경찰관</u>	-
	-
	-
	-
	-
	-
	-
②사법경찰관	-
	-
	-
	-
	-
	-
	-
,	
③사법경찰관	-
	-
	-

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第218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檢事,司法警察官은 被疑者其他人의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 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u>검사</u> <u>가</u>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 청인은 <u>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u> <u>청에 대응한 법원</u>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 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 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
第218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
收) <u>司法警察官</u>
·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
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u>.</u>
② <u>검사</u>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지방법원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 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 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第219條(準用規定) 第106條, 第10 | 第 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1 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 項.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第140條, 第1 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 但, 사법 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處分을 함에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삭 제>

第219條(準用規定) <u>①</u>
<u>司法警察官</u>
<단서 삭
<u>제&gt;</u>

②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수사하 는 때에는 제200조의2, 제200조 의3, 제200조의4, 제201조, 제20 4조, 제205조 규정에 의한 영장 신청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검사에게 할 수 있 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u>사법경찰관</u>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	
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②사법경찰관
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	3
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u>사법경찰관</u>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犯罪의 搜査에 없어서는 아니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檢
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	<u>事</u>
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留	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留
置의 請求) ①檢事는 第221條의	置의 請求) ① <u>第221條</u>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 分이 必要할 때에는 <u>判事</u>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第221條의4(鑑定에 必要한 處分, 許可狀) ① (생 략)
  - ②第1項의 許可의 請求는 <u>檢事</u> 가 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 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② (생 략)
  - ③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 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 第237條(告訴, 告發의 方式) ①告訴 또는 告發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하여야 한다.
  - ②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 第238條(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第238條(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u>司法警察官</u> 告訴 또의 措置) ① 司法警察官이 告訴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迅速히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

	사법경찰관
	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는 判事-
	② (현행과 같음)
	第221條의4(鑑定에 必要한 處分,
	許可狀)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법경</u>
	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檢事
	<u>.</u>
	③·④ (현행과 같음)
	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②
	(현행과 같음)
	3
	<u>요구할</u>
	第237條(告訴, 告發의 方式) ①
	司法警察官
	<b>.</b>
	②司法警察官
	第238條(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
	의 措置) ① 司法警察官이 告訴
۱	正上 生發列 法剥对 犯罪忌 坤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第241條(被疑者訊問) 檢事 또는 | 第241條(被疑者訊問) 司法警察官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 에는 먼저 그 姓名, 年齡, 등록 기준지, 住居와 職業을 물어 被 疑者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 야 하다.

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하

査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 날로부터 3月 以內에 搜 査를 完了하여 제245조의5제1 항에 따라 檢事에게 송치 또는 送付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 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제1항 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 로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 는 그 법정대리인(고소인 · 고발 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 형제자매 를 포함한다)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42條(被疑者訊問事項) 檢事 또 | 第242條(被疑者訊問事項) 司法警 察官-----

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	
要事項을 訊問하여야 하며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u>_</u>
第243條(被疑者訊問과 參與者) 檢	第243條(被疑者訊問과 參與者) <u>司</u>
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	<u>法警察官</u>
廳搜査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	
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	
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	
야 한다.	<b>.</b>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사법경찰관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	2
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	
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	
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	<u>사법경찰관</u>
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3)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 ④ (생 략)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 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 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 재하여야 한다.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 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 다.
  - 1. ~ 4. (생 략)
  -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 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 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 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 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
있고,
<u>.</u>
④ (현행과 같음)
⑤사법경찰관
<u> </u>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
지) ① <u>사법경찰관</u>
<u>.</u>
1. ~ 4. (현행과 같음)
②사법경찰관
<u> </u>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 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1. • 2. (생략)

第245條(參考人과의 對質)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

	<u>사법경찰관</u>
제	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사법경찰관
	②·③ (현행과 같음)
제	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
	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
	· 1.·2. (현행과 같음)
公	1.・2. (원왕과 실름) 5245條(參考人과의 對質) 司法警
牙	7490际(多ケハギヨ 到貝川円伝言)
	<u>——</u> 察官

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 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 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 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 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

제245조의2(전문기소자문위원의
<u>참여)</u> ① <u>여부</u>
를 결정하기
전문기소자문위원
을 지정하여
② 전문기소자문위원
③ <u>전문기</u>
소자문위원이
전문기소자문위원의
 레이(도구 이의(코) 므 키 & 키 므 이 이 _ 코)
제245조의3(전문기소자문위원 지
<u>정 등)</u> ① 전문기소자문위원의 자문
<u> 연단/] 그러 반기 시간</u>

-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전문수사자문위원</u>의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 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 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 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u>전문수</u> 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 치 등) (생 략)

<u><신 설></u>

<u>= -</u> 전문기
소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전문기소자문위원
·.
③
전문기소자문위원
④ 전문기소자문위원
⑤ 전문기소자문위원
제245조의4(준용규정) 전문기
<u> 소자문위원</u>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
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u> </u>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 | <삭 제> 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 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 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 우에는 그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 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 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 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 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 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를 요청할 수 있다.

청) 제238조제2항의 통지를 받 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 은 사람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관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이의를 신 <u>청할</u>수 있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 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 다.
-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 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 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u>제245</u> 조의5제1항제2호
②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신 설>

第257條(告訴等에 依한 事件의 處理) 檢事가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查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 날로 부터 3月 以內에 搜查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한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 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 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 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제246조의2(피의자등 의견청취)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 자,피해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 다)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312조<u>(사법경찰관의 조서 등)</u> ① <삭 제>

③ 수사기관 -----

\_\_\_\_\_

\_\_\_\_\_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 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이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 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 -- 사법경찰관 앞----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 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 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 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 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 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⑤제3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 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 ⑥사법경찰관----

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 적법
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으로서 급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	에서의 결	작성자의	진술이	에 따라
ユ	성립의	진정함	이 증명	1된 때
에부	는 증거:	로 할 수	: 있다.	

•	